

오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23년 7월 17일 조례 제206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보호조치)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이나 폭행 등을 받은 경우 휴식 및 업무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3.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4.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시장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오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5조의 보호조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신청) ①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8조(지원결정)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15일 이내로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제9조(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 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문구의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제10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호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오산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 대행한다.

1. 폭언이나 폭행 등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폭언이나 폭행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3.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원 및 사업의 추진사항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오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지원 기준(제6조제2항 관련)

지원 구분	근 거	지원 한도	세부 기준
휴식시간	제5조	4시간 이내	피해상황, 정도 등에 따라 업무시간 내 연장 가능
심리상담	제6조제1항제1호	상담 연계	직원 힐링상담 프로그램 연계
의료비	제6조제1항제2호	1회 최대 30만원	병원진료비, 약제비 등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제6조제1항제3호	예산의 범위 내	위원회 의결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6조제1항제4호	예산의 범위 내	민원담당자 힐링프로그램 운영
그 밖의 사항	제6조제1항제5호	예산의 범위 내	

■ 오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지원 신청서

신청자	소 속		직 급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성 명		연락처			
민원 내용	건 명					
	민원요지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피해 내용	피해사실	6하 원칙에 의거, 간략히 요약 기술				
	입증자료	입증자료 있을 시 첨부				
지원 신청 내용 (□에 체크)	「오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input type="checkbox"/> 제1호 심리상담 <input type="checkbox"/> 제2호 의료비 <input type="checkbox"/> 제3호 법률상담 외 <input type="checkbox"/> 제4호 교육 및 연수 <input type="checkbox"/> 제5호 그 밖의 사업 (※ 내용 작성)					
	은행명		계좌번호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의료비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증빙자료	진단서,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계약서 등 첨부					
확인자 (부서장)	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오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에 관한 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오산시장 귀하